

◇ 주제 논문

학교 도서관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개선의 필요성

조 재 후

(부산시교육위원회 장학사)

I. 서 론

A. 학교도서관(觀)의 변천

우리는 아직도 “도서관”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생각도 그 교육적 기능 및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보다는 학교에 덧붙여있는 부수적인 독서시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 경향이 여전한 것 같다.

물론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을 더듬어 볼 때에 학교교육이 교사의 강의나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에는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과는 유리된 것으로 다만 책의 수집저장소 같은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였던 때도 있었다. 또 학습의 보조기관으로 국어과 지도의 보조적 읽을거리를 제공하거나 여가선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불과하여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으로서 족하였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의 원조로서 개인차에 따른 능력을 제발하는 것으로 교육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학습실로서 학교교육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개인차에 따른 새로운 교육관과 사회의 발전은 학습교재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간형성을 위한 독서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인정받게 된 것이니, 그 개념도 정선된 학습자료를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이용자(학생 및 교사)에게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미디어라이(Media ry...Media library), 또는 학습자료센터(Learning resources Center)와 동의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1960년도에 발간된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자명하여 질 것이라 생각된다.

“도서관이란 말은 전통있고 의미깊은 말로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정의도 적어도 과거 60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계승하여 오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요구가 변화하는데 따라서 봉사계획도, 커뮤니케이션 자료

의 범위도 항상 탄력성을 가져 왔으며 장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학교가 부단히 성장하는 사회제도의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학교도서관도 새로운 자료와 모든 종류의 자료의 새로운 이용을 포함한다고 하여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언어가 아니라 봉사활동 그 자체가 학교도서관의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자료센터, 교재센터, 교재자료센터 등에 상당하는 것이다.

B. 교육방법의 개선과 학교도서관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의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하여 오고 있는 학교교육에서는 학교도서관은 여가이용의 독서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교육은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제발하고, 자율적인 학습태도의 육성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 생산적인 인간교육을 목표로 하는 오늘의 학교교육은 학교도서관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 및 도서관 이용지도는 자율학습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면학하는 기풍을 조성하게 되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의 바람직한 개발을 가늠케 할 것이다. 또 도서관자료의 활용으로 정보화시대에 처하는 불가결의 생활수단인 자료의 활용능력을 체득시켜 줄 것이며, 그곳에서 행하여지는 독서지도는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독서의 생활화를 통하여 중진학습하는 국민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에 학교도서관은 우수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힘이 되는 것으로 우수한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은 세계적인 교육경쟁의 추세하에서 시대적인 요청이며 근대화로의 도약단계에 있는 우리 국가적인 현실에서도 그 중요성은 재인식되어야 하며 따라서 아직까지의 학교도서관 정책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I. 학교도서관 교육정책의 개요

그러면 우리 정부당국에서 학교도서관의 육성을 위

한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은 어떠하였기에 그 개선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물론 우리 교육이 민주국가의 유능한 애국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삼게 된 이래로 선진 민주국가의 교육정책을 참작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방법 개선의 중핵으로서 학교도서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새로운 교육추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며 따라서 교육정책상의 일관성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간의 학교도서관 육성에 관련된 사항을 추려 보며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A. 각급학교 시설기준령의 제정 공포

1.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시설기준령 제정 공포.

1959년 4월 1일에 공포된 문교부령 제82호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시설기준령” 제3조 3항에는 도서실을 구비하여야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령 제7조에는 “각 학교에는 3학급까지는 300권이상의 도서를 비치하여야 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3학급마다 200권 이상씩을 가산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칙 제2조에는 동령 공포일 이후에 설립되는 학교는 그 학교의 편성년도까지는 동령에 의한 각 시설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는 동령 공포일 현재에 기존하는 학교로서 시설 기준이 미달하는 학교는 동령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1964년까지)에 기준에 도달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었다.

2. 국민학교 시설 기준령 제정 공포.

한편 1960년 5월 12일에 문교부 훈령 제67호로 공포한 바 있는 “국민학교 시설 기준령” 제3조 9항에는 도서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학교에는 학생에 유용한 것으로서 6학급까지는 500권이상의 도서를 비치하여야 하고, 6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6학급마다 300권 이상씩 가산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도서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는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령 부칙에도 역시 동령 공포일 이후의 신설교는 그 학교의 완성년도까지, 그리고 기존 학교는 동 시행일부 8년(1968년) 이내에 소정의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다.

3.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제정 공포.

1967년 10월 26일에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각급 학교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3253호로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을 공포한 바 있는데 동령 제5조 5항에서 도서실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 교구에 관한 규정중에서 각급학교

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 등 교구를 두도록 하였고, 연도별 시설 보충 계획과 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문교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4. 학교 연도별 시설 보충 계획 시달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제16조 및 부칙 223항에 의한 연도별 시설 보충 계획으로서 우선 중학교 평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8년 10월 17일에 문교부령 제201호로 “학교 연도별 시설 보충에 관한 건”을 시달한 바 있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설중학교의 경우는 개교후 1년 이내에 소정 시설의 70%를 갖추고, 개교후 2년 이내에 소정 시설 100%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나. 기준령 시행 당시의 기설중학교는 교사, 기타 시설 설비를

- ① 서울 특별시는 69년도내에 갖추고
- ②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전주, 등지에서는 70년도에 갖추고
- ③ 기타 지역에서는 70년도에 소정 시설 준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는 물론 기준령 제5조 5항에서 규정된 도서실의 설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B.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제정 공포

학교도서관 이외의 도서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믿어지는 바이지만, 1963년 10월 28일에 법률 제1424호로 제정 공포된 도서관법과 1965년 3월 26일에 대통령령 제2086호로 공포된 도서관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니 법 제3조 3항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성격을 밝혔으며 특히 법 제25조에서는 학교 도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법 제26조에서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C. 사서교사 자격기준 및 보수규정 제정

정부는 1963년 12월 5일에 법률 제1463호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때에 법 제3조에서 교사를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등으로 나눔으로써, 비로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었으며 1964년 3월 25일에 대통령령 제1753호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을 때에 사서교사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D. 사서교사 T.O배정

그 후 1968년도초에 교육공무원 T.O를 배정할 때에 전국 11개 시도에 합계 33명의 사서교사 T.O를 배정하게 되었으며 제적 학생수 1,200명이상의 학교로서 면적 50평이상, 과석수 100석이상에 장서 3,000권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시설을 갖춘 곳에 시범적으로 사서교사를 두게 하였다.

E. 문교부 지정 학교도서관 연구학교의 운영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한 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탐색하는 연구학교를 전국적인 규모에서 문교부가 지정 운영하였던 일이 본인이 아는 바로는 2회 있었으니

한번은 1954년 5월 17일에 경남 마산여자고등학교를 지정하여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조직 운영하고 또 학습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하에 연구를 추진하여 1956년 11월 7일에 전국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 발표회를 가진 바 있었으며,

두번째는 1963년 3월 4일에 전남 여수 동국민학교를 학교도서관 영역 연구학교로 지정하였으며, 동교에서는 “독서기록의 습관화를 통한 독서생활 조장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하에 1964년 11월 29일에 연구 발표회를 가졌던 바 있었다.

F. 사서교사의 양성

우리 나라에서 사서교사의 양성은 1958년도에 문교부 주최로 연세대학교에서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지원하에 사범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그 시초이며, 현재까지의 사서교사 양성의 실적은 대략 다음과 같다.

※사서교사 양성상황(240시간 이상 사서교사 양성 재교육강습 이수자)

	양 성 기 관	기 간	양성인원	비고
1	연 세 대 학 교	1958—1959	188	
2	이 화 여 자 대 학 교	1961, 1964—1969	286	
3	한 국 도 서 관 협 회	1965—1967	418	
4	각 시 도 교 육 위 원 회	1960—1964	390	
계			1,282	

G. 장학자료의 제공

문교부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장학자료로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1967년도 문교부 “장학 자료”중 참고자료 제8절에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로서 “경기 중·고등학교 도서관 운영계획”을 소개한 바 있으며,
2. 1968년도 및 1969년도 문교부 “장학자료”중 “학교운영계획 자료”로서 광주 북중학교의 운영계획을 소개한 가운데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제 해결의 신장”으로서의 도서실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다.

III. 전국 학교도서관 현황

1969년 3월 말현재의 전국의 학교도서관은 총 3,767관이며, 열람석수는 208,856석, 그 곳에 소장되어 있

는 총장서수는 실로 7,109,869권으로 이것들을 투자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줄 잡아도 약 35억원의 돈이 들었으며 1969년도 1년간의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로서 약 3억8천1백만원이 쓰여졌다.

1962년서 부터 1969년까지 8년간에 학교도서관의 수는 약 23배나 증가되었으며 연간 연이용자수는 1961년도에는 1,191,646명이던 것이 1968년 1년간의 총이용자수는 36,195,055명으로 무려 34배로 증가되었으니 그간의 발전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학교 도서관 증가상황표

연도	도 서 열 람 석 수	장 서 수	연 이용자 수	예 산
1962	149,180,665	403,528	1,191,646	
1963	259,23,779	583,929	5,219,365	
1964	950,55,919	1,349,343	9,994,934	37,754,871
1965	1,422,94,146	1,944,737	17,834,433	43,532,897
1966	2,184,129,029	2,914,091	20,823,374	159,288,327
1967	2,956,172,475	4,680,602	27,115,467	221,961,864
1968	3,322,176,242	5,991,066	28,181,339	256,462,329
1969	3,767,208,856	7,109,869	36,195,055	381,547,679

IV. 학교도서관 정책 개선을 촉구한 건의사항

행정적으로 소외된 가운데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학교 도서관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한 선각적인 학교 경영자와 열성있는 사서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일부 지방 교육 행정 책임자의 적극적인 시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는 여전히 정책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관심이 미온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니 그간의 사정은 1962년이래로 해를 거듭하면서 결의한 바 있는 대외 건의사항들을 더듬어 보려는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면 관계상 각년도별 건의사항을 일일이 소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1962년 7월 22일 제1회 전국 도서관 대회의의 결의문과 학교 도서관 관계 건의사항을 되 새겨 보고 과연, 그동안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정책이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로 개선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서 다음에 소개하는 바이다.

결 의 문

국가재건, 민족문화 증흥의 기치(旗幟)를 높이든 혁명대열속에서 도서관문화 불모의 이 나라 각처에서 일하는 우리 도서관인 243명은 1962년 7월 21일과 22일에 서울에 모여서 후진과 칙체의 황무지에 도서관사업

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 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시민생활의 거점인 공공도서관 업무와 계획의 두뇌를 제공하는 특수도서관, 대학교육의 센터를 이루는 대학도서관, 학교교육의 실행의 구실을 담당하는 학교도서관, 이 모든 선진 여러 나라의 개념에서 멀리 떨어져 아직도 태고의 정속속에서 이 땅의 도서관은 그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국 도서관인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이 나라 도서관사업의 혁명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바 기술과 정열을 바칠 것을 다시금 굳게 결의하는 바입니다.

오랫 동안 난산을 거듭하던 도서관법의 제정공포를 목전에 두고 정부의 과감한 시책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재건국민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이러한 발판위에서 명실 공히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 사항(학교도서관 관계사항 발췌)

1. 국민교육과 민족문화 향상에 있어서 공공 및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확고한 국가의 도서관정책을 수립할 것.
2. 도서관 행정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문교부 기구내에 도서관국(혹은 과)를 독립시키고 중앙 및 지방에는 도서관 담당 장학관(사)을 임명할 것.
3. 공공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
4. 국,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도서관의 효용을 위한 과목을 새로이 배정할 것.

5. 각시, 도마다 「학교도서관」 연구 지정학교를 수교씩 지정 운영할 것.

V. 결 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이 우리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뜻대로 조성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 35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있으며 교육현장의 필요에 의하여 지급도 연간 약 3억 8천만원의 돈이 쓰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해를 거듭하여 감에 따라서 증가되어 가는 실정에 있음을 생각할 때에 아직까지의 교육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설사 어떠한 시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각급 학교의 시설 기준령의 예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도서관의 설치와 도서관의 비치규정은 명목만에 그쳤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시책에는 반드시 행정적인 뒷 받침이 따라야만 비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의 학교도서관은 시설, 설비의 충실을 위한 아직까지의 자의적인 노력에 결 드려, 학습자로 센터로서 자립경제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과 자주국방을 위한 승공사상의 고취, 자조정신의 함양과 바람직한 국민성의 형성을 위한 학습활동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학교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견지에서 관심과 행정적인 지도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문제로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책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70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學術雜誌預約購讀에 관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限 世界の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費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부와 單行本부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을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費下께서 아직도 費下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을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폰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

